

전문연구요원제도 안내

2009년 하반기 종합설명회



2009. 5

교육과학기술부

▣ 일반사항에 대한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인재육성과(☎ 02-2100-623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02-3460-9087~8)
- ※ 산기협 홈페이지 : <http://www.koita.or.kr>

▣ 상세하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

- 병무청 및 관할지방병무청
- 대전본청 ☎ 042-481-2818, 2813
- ※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상 제도 안내

-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http://www.mest.go.kr>
- 관련양식이나 작성요령 다운로드
- ☞ 교육과학기술부> 정보마당> 사업 및 제도안내> 인재정책실>
전문연구요원제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인재육성과

* 동 설명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담당자가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한 자료임.

목 차

- I .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요.....
- II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및 신청안내.....
- III .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추천기준 시행

1.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요

■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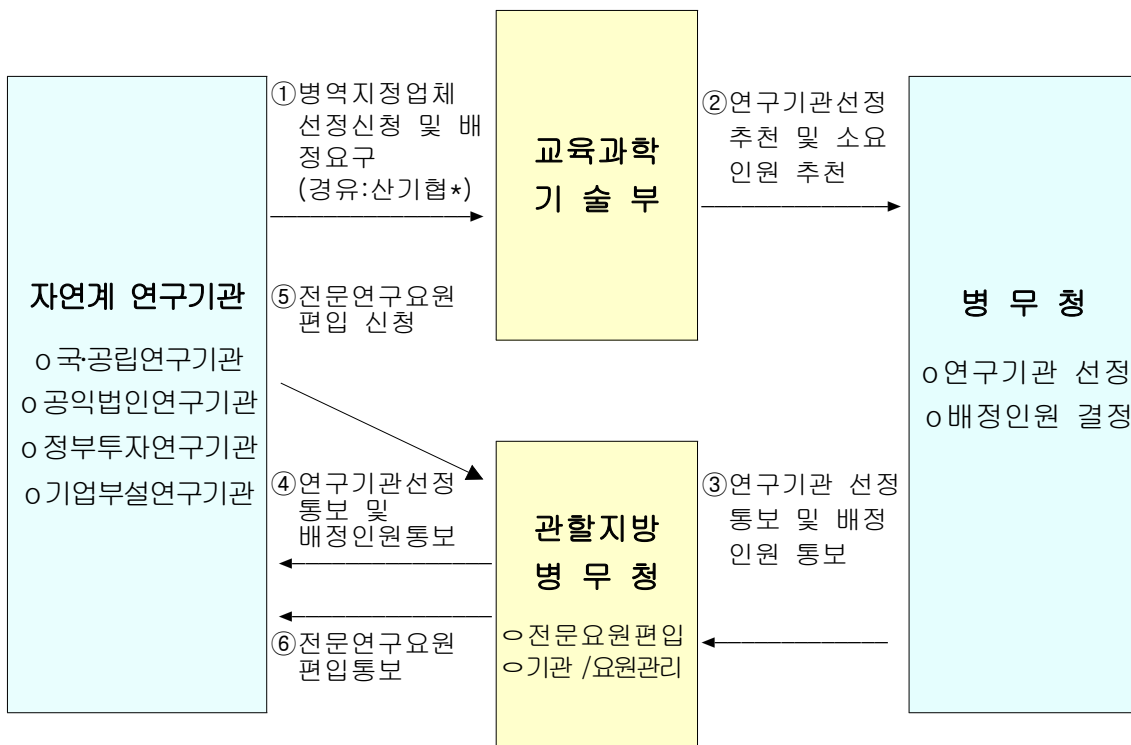
-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현역입영대상자(석사학위자 이상)가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3년간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

※ 보충역은 학사학위자도 중소기업에 한해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가능

- 전문연구요원의 정의(병역법 제2조 제12호)

- “전문연구요원”이라 함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전문연구요원 제도 업무처리 절차(자연계) >



※ 산기협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약칭임.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 선정기준 및 추천권자(교과부장관이 추천자인 경우)

구분		추천기준	추천권자
1. 자연계연구기관	(1)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정부투자연구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부설연구기관	
	(3)공익법인연구기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의 부설연구기관	
	(4)기업부설연구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의 부설연구기관 ※ 대·중소·벤처기업	
2. 특정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지정된 연구기관 ※ 한국(광주)과학기술원의 자연계박사학위과정 및 부설연구소 포함	
3. 우수연구집단인연구기관(ERC/SRC/MRC 등)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해 각급대학에 지정된 연구기관	
4. 대학연구기관	(1) 자연계대학원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 이공계와 기초의학계	
	(2) 대학부설연구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대학부설연구기관	
5.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지역혁신센터(RIC) : '08년 직제개편에 따른 추천권 이관(교과부→지경부)으로 '09년부터 추천기관에서 제외됨

◦ 선정절차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연구기관이 매년 6.30까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신청·접수) ⇒

교육과학기술부 검토 추천(7.31까지)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결과 통보(병무청 11~12월경)

※ 벤처기업은 매년 1. 20~1. 31, 6. 20~6. 30까지 년 2회 신청 가능
(접수기간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문연구요원 배정(병역법 시행령 제75조)

- 배정 : 연구요원의 규모, 채용율,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결정
 - 전체인원 : 소요인원의 총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총 인원 결정
 - 업체별 배정 :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추천기준 근거)와 전년도 채용실적 및 복무관리실태 등을 토대로 배분

▣ 전문연구요원 선발(병역법 시행령 제78조)

- 자격요건 :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 단, 중소·벤처기업은 학사학위 보충역대상자도 편입 가능

- 선발절차
 -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기업체연구기관,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때로부터 입영 5일전 이내) → 관할지방병무청 → 편입승인여부 통보

II. 병역 지정업체의 선정 및 신청안내

■ 지정업체의 정의

- 지정업체라 함은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기관산업체·방위산업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를 말함(병역법 제2조 제14호).

■ 지정업체(연구기관)의 선정기준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기초의학계 연구전담요원 포함) 5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 신청기한('09년 하반기) : '2009. 6. 19(금) ~ 30(화)(예정)

※ 신청업체에서 우편신청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 택배나 쿠팡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접수현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koita.or.kr>)에서 접수마감일 이후부터 '09. 7 .10(금)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함

■ 신청 · 접수기관(기업부설연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력지원팀) (우편번호 137 - 888)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지하철 3호선 양재역(6번출구) 성남방면 600m 소재)

- 문의·연락처 : (02) 3460-9087~8

※ 우편신청시 겹면에 수신처를 '인력지원팀(전문연구요원 신청자료 재중)'으로 필히 기재하여 신청서류를 해당부서가 정확히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신규신청인지 기존지정업

체인지의 구분도 겹면에 표시요망

- ※ 우편발송은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할 수 있는 수단(예컨대, 빠른 등기)으로 하고, 접수확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보관해야 함

■ 추 천

- 지정업체 추천권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는 서류검토 및 필요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일정기준에 합당한 연구기관에 한하여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 기준’에 의거, 총점 및 의견을 기재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함.
- ※ 상반기(1월)에 신청한 벤처기업은 2월말까지, 하반기(6월)에 신청한 대·중소·벤처기업과 출연(연)·국공립연구기관은 7월말까지 병무청장에게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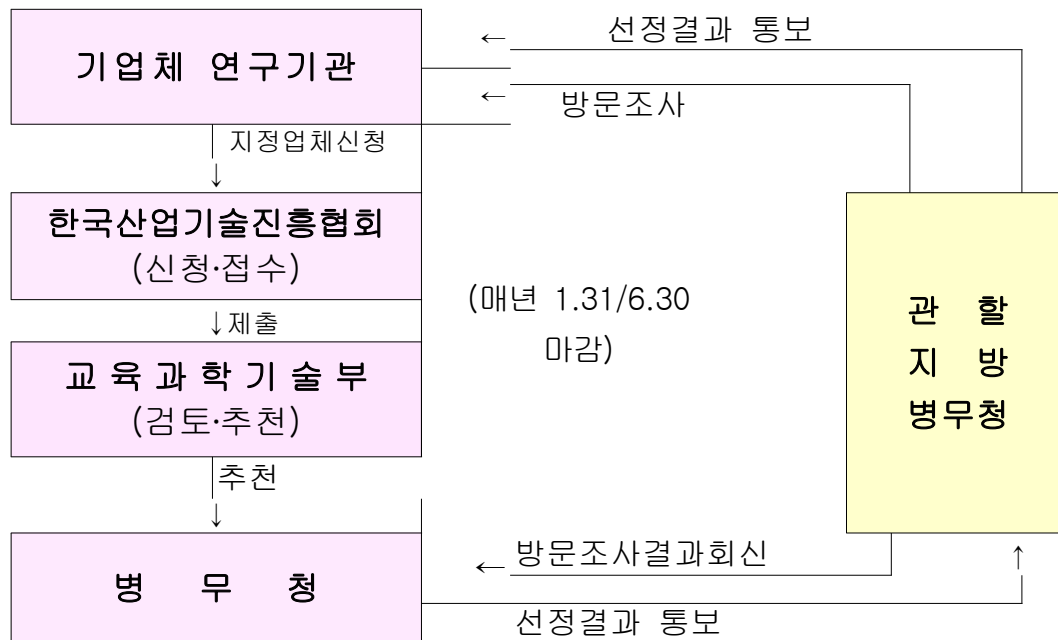
■ 선 정

- 병무청에서는 교과부 추천기관에 대하여 추천등급 등을 반영하고, 서류심사 및 관할지방병무청 등이 선정 가능성이 많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함.
- ※ 서류심사 및 방문조사 내역(방문조사는 3월 및 9월경 실시)
 - 서류심사 : 선정기준에 일치 여부
 - 방문조사 :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연구전담요원 수, 근무여부 등)
- ※ 하반기(6. 19~6. 30)에 신청한 기업(연구기관)은 9월경에 방문조사가 있을 예정이며 11월경에 선정여부를 관할지방병무청에서 직접 통보 예정(병무청 홈페이지에도 사전 게재)
- 동 서류심사 및 방문조사를 통하여 선정기준에 합당한 연구기관에 한하여 병무청장이 지정업체로 선정함.
- ※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합병한 때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 통 보

- 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선정 결과를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 및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 선정 여부를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 장에게 통보함.

■ 선정절차



※ 벤처기업은 매년 1. 31, 6. 30 까지 년 2회 신청가능

■ 신규 신청기관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아래의 순서대로 2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스프링, 제본, 스테이플러(스텝플러) 등은 사용하지 마시고, 클립이나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

- 1) 신청공문 2부(신청기관에서 임의 작성하되 다음사항 반드시 포함)

구 분	주 소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 화 (E-mail)	팩 스
담당자						

- 2)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 2부 (「붙임1」양식)
- 3) 법인등기부 등본 2부(원본) - 말소사항분 포함
- 4)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2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지원팀, ☎ 02-3460-9010 ~ 7)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제출

5) 자연계분야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회계사 발급)와 ‘학위수여증명서’(학교장 발급)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각 2부

※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신청자격 조건인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

(대기업: 5명, 중소/벤처: 2명 이상)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6)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사본 2부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신고/완료된 내역)

7)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2부 (「붙임2」 양식)

※ ‘통보서’상의 작성내용 및 증빙서류는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에 의거 병무청에 추천되는 중요 사항임

8) 소요인원 통보서상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특허증, 국가개발사업 협약서 등) 사본 1부

9)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2부

10)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와 연구소 ‘약도’ 2부 (「붙임4」 양식)

■ 기 지정업체 연구기관 구비서류

1)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1부 (「붙임2」 양식)

– 소요인원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소요인원란에 ‘0’명으로 작성후 제출해야 추후 불이익이 없음

2) 소요인원 통보서상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특허증, 국가개발사업 협약서 등) 사본 1부

■ 신규 신청기관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아래의 순서대로 2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스프링, 제본, 스테이플러(스텝플러) 등은 사용하지 마시고, 클립이나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

1) 구비서류는 공문과 함께 각각 2부 편철 제출

2) 등기부 등본은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이내(’09년 4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

로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3)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는 2009년 6월 중에 세무·회계사가 발급한 것만 제출 가능

※ 2009년 1월 이전에 채용된 자는 채용월부터 현재까지 급여내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2008년 5월~2009년 5월 이내의 내역만 제출)

※ 세무·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표자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나,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대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이 '09년 4월 1일 이후 채용되어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사본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 불가나 서류반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학위증빙은 학위수여증명서 원본이나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만 인정되며, 졸업장 사본, 수료증명서, 학위기는 인정 안됨.

※ 제출서류 2부를 원본과 사본 각 1부씩 제출해도 무관하나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 동사무소 발급본(동사무소 직인 날인)과 인터넷 발급본은 원본으로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경우 자격증 사본 제출

< 자연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연구전담요원 >

○ 군필(또는 군면제자)인 남성 또는 여성만 해당되며, 신청당시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또는 영리법인의 연구개발활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 (병무청예규 제2조)

○ '연구전담요원' 산정시 제외되는 경우 (병무청예규 제6조)

· 민법, 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임원의 직책을 겸한 경우

· 다른 업무로 6개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함)중인 경우

·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경우로써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에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자연계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이 외국학위 소지자인 경우에 반드시 한 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공증된 서류를 제출

※ 외국학위자의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필히 공증 후 제출

※ 단, 영어권은 한국어 공증없이 학위수여증명서 사본만 제출

구분	국외 학위자	국내 학위자
석사	○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 제출 ※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여부 불분명한 경우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박사	○국내에서 자연계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석사학위수여증명서 원본과 박사학위증 사본 제출도 가능 ○석·박사 모두 외국에서 수여받은 경우, 박사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석사학위수여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를 제출 ○석·박사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자연계 여부가 모두 불분명할 경우 성적증명서를 공증받아 추가 제출	1. 학위수여증명서원본 또는 2. 학위번호가 등록된 졸업증명서 제출

- 6)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을 표시(동일건에 대해 매수가 많을 경우 첫장만 원본대조필)
 - 7) 대학 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연) 등)은 배타적사용 권한증명서(임대계약서 or 입주계약서 or 총장확인서) 사본 2부
 - 8)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태조사서와 연구소 약도는 실태조사시 활용할 예정임.
-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후 연구소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과 인력지원팀에 즉시 통보
- 9)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통보서’ 양식 작성 방법(「붙임3」 참조)
 - 10)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사본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내역)
 - 11) 신청방법은 “직접제출” “등기우편”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신청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추후 반환되지 않음
 - 12)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미확인 등으로 인한 경우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며, 접수·추천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작성요령 및 처리절차 안내

(뒷면)

신청사무명 및 법령근거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병역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작성요령	○ ☐ 표는 √로 표시 ○ 기간산업체 선정여부 : 선정여부를 ○, × 로 표기(산업체와 동시에 신규 신청한 경우 신규신청에 ○, ×로 표기) 하고 산업체의 업종, 소재지 기재 ○ 공개시장 : 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 등으로 기재 ○ 연구전담요원(석사이상 학위취득자) ⇒여백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 작성 첨부 -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여자 등만 대상임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제외) -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연구기관은 자연계 분야 학위취득자 - 실제 연구업무에 종사(파견·휴직·병가 또는 교육소집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람만 작성 - 외국대학의 박사학위증에 학과·전공 등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석사학위증 첨부, 석사학위증에도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성적증명서 첨부 - 병역사항은 군복무(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만료자 포함)를 마친 사람은 “필” 로 기재하고, 기타 제2국민역, 병역면제, 여자 등으로 기재.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은 제외 - 과학기술원(한국, 광주) 및 대학연구기관 : 학칙 - 우수집단인 연구기관 : 당해 연구기관의 설치 또는 운영규정 ○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 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 : 대학설치인가확인서 - 과학기술원 부설연구소 및 대학 부설연구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설연구기관으로 인정하는 서류 - 방위산업연구기관 : 위촉서 사본 ○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및 학위수여 증명서 원본 (자연계 연구기관중 석사학위 이상 연구전담요원이 5인 이상(대기업) 2인 이상(중소/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 부설연구기관에 한함) ○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사본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내역)		
처리절차	신청인 업체의 장	추천기관	처리기관 병무청
	신청서 작성 결과 통보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국무조정실장 ○ 국방과학연구소 결과 통보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별첨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원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 1) 연구소명과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연구소명 일치
 - 연구소명 아래 ()안에 반드시 업체명 기재
 -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변경신고 후 접수(자세한 사항은 위의 항목에 준함)
- 2) 기업규모는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벤처기업이며 다른 사항은 연구소설립 기준을 따름(연구소 신고시 신고된 기업규모와 선정신청서상의 기업규모 일치)
- 3) 대표자의 이름이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이름과 일치
 -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변경신고 후 접수
- 4) 연구소 소재지는 인정서상의 소재지와 동일 해야함
 -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변경신고 후 접수
- 5) 전화번호 및 팩스
 - 신청공문상의 번호와 일치(연락 가능한 담당자 번호)
- 6) 연구소인정일 및 인정번호
 - 본회 연구소 인정서상의 인정일 및 인정번호
 - * 인정번호는 인정서 왼쪽 상단의 8~10자리(6자리일 경우 앞에 19가 생략된 것임)이며 최초인정일이 인정서상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연구소인정서상의 발급일자를 기재
- 7)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번호
- 8) 기업공개 여부
 - 공개시장 : 거래소(상장증명서 내지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 출력 후첨부), 코스닥(코스닥기업등록확인서 첨부)으로 기재
 - 종목코드번호 : 관련 확인서상의 종목코드
- 9) 산업분류코드(KSIC번호)와 연구분야 일치
 - 연구분야 : 전기·전자(정보통신·정보처리 포함), 기계·금속, 화학·제약(생명과학·바이오·소재 포함), 섬유, 식품, 건설·엔지니어링(환경 포함), 기타
 - KSIC번호가 72000, 72009, 72200 등 72---로 시작되는 연구소는 연구분야란에 정보처리로 기재(위의 경우를 제외한 연구소의 경우 현재 인정받은 연구소의 연구분야로 기재)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사업자등록증상의 ‘⑧ 교부사유’에 기재되어 있는 소득표준유크드 번호를 기입할 것(만약, 사업자등록증상에 소득표준유크드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소득세과에 문의하여 “소득표준유크드”번호를 확인받아 기입하거나 공장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동 등록증상의 ‘공장의 업종’란에 있는 분류번호를 기입할 것

- 10) 건물의 독립·미독립 여부 확인
 - 독립 : 연구소와 타부서 공간이 독립되어 있음을 의미(타부서와 출입문 별도 사용)
 - 미독립 : 연구소와 타부가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
 - ※ 연구소는 타부서와 독립되어 운영되는것이 기본이므로 **미독립시에는 신청불가**
- 11) 연구전담요원수 확인
 - 접수일 현재 연구소지원팀에 등록된 현황과 일치해야 함
(최종현황 반영은 연구소지원팀 전산현황으로 처리)
 - * 연구소가 주/부소재지로 나누어진 경우 점수산정시 주소재지 연구 전담요원 수만 인정
- 12) 자연계 석사이상 전담요원수 확인(대기업: 5명 이상, 중소벤처 기업: 2인 이상)
- 13) 석사이상 전담요원의 자연계 여부확인
- 14) 기간산업체(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여부
 - 선정여부: O, X 기재
 - 기간산업체 주소 : 현재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곳 기재(기간산업체 선정업체만 해당)
 - 업종 : 기간산업체 선정 업종 기재(기간산업체 선정업체만 해당)
(ex: 정보처리, 통신기기, 전기전자, 기계, 건설 등)
 - 신규신청 : **현재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지정신청 중인 경우에만 기재**
- 15) 전담요원의 등기부상의 임원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이 최근 2개월 이내 발행분임을 확인하며 임원부분 필히 대조 확인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 16) 소요신청인원수
 - 누락되거나 오류기재 주의
- 17) 연구분야와 신청 전공학과와의 일치 확인
 - 일치하지 않아도 접수는 가능하나 추후 인원배정이 안될 수 있음
- 18)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란(병역사항 및 연구소발령년월)
 - 병역사항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면제’ 등으로 기재하며 여자인 경우 ‘여자’,
외국국적 소지자인 경우 ‘외국국적’으로 표기
 - * 연구전담요원 중 석사 이상자가 **군 미필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불가**
 - 연구소발령년월 :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된 일자를 기재
- 19) 업체장의 직인 여부 확인

[붙임 2] : 기업체 연구기관 用

수신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참 조 : 과학인재육성과장/ 인력지원팀장

접수번호

※ 접수처 기재
(작성하지 말것)

☐ 신규 ☐ 기존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① 신청업체명		② 기업규모	☐ 대 ☐ 중소 ☐ 벤처 ☐ 기타
③ 연구소명		④ 연구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⑤ 법인등록번호		⑦ 기업공개 (IPO) 여부	공개시장 : ☐ 거래소 ☐ 코스닥
⑥ 사업자등록번호			종목코드번호 :
⑧ 연구소 소재지	우편번호 - 주소 : 업무담당자:부서(), 이름() (e-mail :)		(직통전화 : () -) (팩스) (e-mail :)
⑨ 병역지정업체 선정년도 (기 지정업체 해당)	년	⑩ 연구소 최초인정연월 [연구소인정번호]	년 월 [제 호]
⑪ 2010년도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신청인원 : 명	⑫ 연구전담요원 현 황	*기재하지 말 것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자료 인용)
⑬ 2009년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실적 (기 지정업체 해당)	배정인원 : 명 (정기 : 명, 추가 명) 편입인원 : 명	⑭ 현재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 (기 지정업체 해당)	총 명 (박사: , 석사: , 학사:)
⑮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	☐ 제출 ☐ 미제출 지출액 : 천원	⑯ 10대 핵심기술 기입	코드번호 :
⑰ 기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선정여부	☐ 지정 ☐ 미지정 업종 : 산업체소재지:	⑱ 신기술 등 인증실적	☐ 취득 (총 건) ☐ 없음 - NET / NEP : 건 - 기타 인증서 및 상 : 건
⑲ 지적재산권	☐ 획득(총 건) ☐ 없음 (특허: 건, 디자인: 건, 실용신안: 건)		
⑳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 수행(건) ☐ 없음 -주관부처명 : -협약(과제)명 및 협약개시일자 : * 대표 1건만 기재	㉑ 추천우대 [지정년도 기입]	☐ 지방소재 연구기관[년]
㉒ 벤처기업 (연월일 기재)	유효기간: . . . ~ . . .	㉓ 기타 의견기재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지정업체 선정추천 등) 및 제75조(소요인원의통보 및 배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합니다. 2009 년 6월 일 ㉔ 대표이사 (인)			
유의사항	1. 첨부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작성하실 것 2. 본 통보서 기재된 사항중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이 안됨		

[붙임 3]

《 소요(인원) 통보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본 ‘통보서’상의 기재내용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추천에 있어서 주요자료가 되므로, 아래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해당란에 간략히 기재하시거나 □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기재·표기하거나 또는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업체에 귀책(작성자는 물론 대표이사까지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됩니다.

- 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업체 상호 기재
- ②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에서 한가지 선택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변경신고 포함)된 사항과 일치되어야 함
-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연구소명 기재
- ④ 1) ‘연구분야’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현황 인용
 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는 “소득표준윌코드”(6자리) 번호를 확인받아 기입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소득세과에 문의)
 ※ “소득표준윌코드” 대신 공장등록증상의 ‘공장의 업종’란에 있는 “분류번호(5자리)”를 기재해도 가능
- ⑤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등록번호 기재
- ⑥ ‘사업자등록증(본점)’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⑦ 1) ‘공개시장’란은 상장된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중에서 하나를 기재(제3시장은 포함안됨)
 2) ‘종목코드번호’에는 상장증명서상의 해당 종목코드번호를 기재하되,
 공개시장 등재 확인 증빙자료(상장증명서 사본, 신문광고 내용 등)를 첨부할 것
 ※ IPO는 첫 주식공매를 의미하는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서, 우리나라의 ‘기업공개’에 해당됨
- ⑧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연구소 소재지 기재
- ⑨ 병무청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 지정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았던)된 연도 기재
 ※ 신규 신청기관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 ⑩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최초인정 연월과 인정번호(동 인정서상의 좌측 상단에 있는 8자리 번호)를 기재하되, 동 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 ⑪ 석·박사 구분없이 2010년에 채용(편입)을 희망하는 전문연구요원 수 기재
- ⑫ 연구전담요원 현황은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음
 ※ 2009년 접수시작일(‘09. 6. 19)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등록된 자료 적용
 ※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해 소요통보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02-3460-9010~7)에 필히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동 신고내역이 수리되어야 인원점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음
- ⑬ 2009년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받은 인원수 및 실제 편입(병무청의 채용승인일 기준)된 인원 기재
 ※ 신규 신청기관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 ⑭ 2009년 접수시작일 기준 현재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 수 기재
 ※ 신규 신청기관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 ⑮ 2008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61조 【별지】 제3호 서식)원본 또는 사본 제출
- ※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것이거나 공인회계사(CPA) 또는 세무사가 확인·발급한 것에 한함
 - ※ 신규 신청기관만 제출(기 지정 연구기관은 제출 필요 없음)
 - ※ 해당서식과 다른 형태의 서식은 일절 인정되지 않음
 - ※ 해당기업이 임의적으로 원본대조필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음
- 1) 사업기간이 2008.1.1 ~ 2008.12.31인 12월 결산법인 이외의 다른 기간의 결산법인인 2008년 1월 이후 가장 최근의 동 지출명세서를 제출할 것
-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것 또는 공인회계사(CPA)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것
- 2) 동일법인 내 2개 이상의 연구소가 동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법인 전체의 지출 명세서도 함께 제출할 것
- ⑯ 첨부된 [붙임7]의 특정연구 개발사업 D/B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10대 핵심기술(Core Technology)에 해당되는 세자리 숫자의 해당 코드번호를 기재할 것
- ⑰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로의 지정여부를 표시하고 지정된 경우 해당업종 및 지정된 소재지 기재

< ⑮ ~ ⑰ 공통사항 >

□ 실적인정대상

- 1) 신기술 등 인증실적 건수
- 2) 국내·외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건수,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건수

□ 실적인정기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최초취득일 이후)

2007. 6. 1. ~ 2009. 6. 19(당해 연도 신청접수 시작일)까지 (최근 2년 내)

- ※ 관련 증빙자료(사본) 첨부시 실적건수는 모두 기재하되,
- ※ 최대 인정건수가 항목당 2건 이내라도 실적이 충분한 경우 해당실적의 3~4건 정도 제출 요망

- ⑮ 1) 신기술은 NET와 NEP에 한하여 인정
- 2) ‘기타 인증서 및 상’은 청장(정부직제상 중앙행정소속기관장의 인정서 포함) 이상의 국가중앙행정기관이 업체명의로 수여한 것만 기재할 것
-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실적은 제외
- ⑯ 특허나 디자인, 실용신안은 특허권자(디자인권자, 실용신안권자)가 업체명(공동명 포함)으로 명시된 것으로 ‘**실적 인정기간**’(2007. 6. 1 ~ 2009. 6. 19)내 등록된 것만 기재
- ※ 특허(또는 디자인, 실용신안)출원 및 특허(또는 디자인, 실용신안)등록 이후 양도받거나 명의 변경된 것은 제외
 - ※ 특허권자(또는 디자인권자, 실용신안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첨부서류는 제외
- 1) 2건 이상인 경우에는 3~4건만 사본을 첨부
- ※ 국외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국 영문약어, 등록일, 등록번호, 발명명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누락시 인정받지 못함)
- ⑰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협약서상 **개시일**이 ‘실적 인정기간(2007. 6. 1. ~ 2009. 6. 19)’내에 있는 경우만 인정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출연금에 협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인정함.

2) 연구개발과제명, 협약기간(연구개발기간), 협약대상기관명(관리기관 및 주관기관), 연구(기술)개발비상 정부출연금, 양 협약기관의 기명날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㉑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이외의 지방소재 연구소 여부 기재

※ 당해 연도 신청접수시작일 현재 기준 지방에 소재한 경우

㉒ 신청일을 기준으로 벤처기업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벤처기업확인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㉓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기재

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대표이사명으로 기재

※ 주의사항

a) 기업체의 경우, 본 ‘소요(인원) 통보서’ 기재내역(증빙자료 포함)은 전문연구요원 지정연구기관 선정 및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등을 위해 교과부가 연구소별 점수화하여 병무청에 추천하는 주요 평가자료로 활용됨

b) ⑮, ⑱~㉑의 실적은 ‘실적 인정기간’(2007. 6. 1 ~ 2009. 6. 19)내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후 담당자 날인을 할 것

c) 연구소의 연락전화번호와 e-mail은 서류보완 확인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해당연구소에 귀책됨

※ 실적과 관련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작성자는 물론 해당기업 대표이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음

d)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e) 기타 전문연구요원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참조·활용하기 바람

(교과부 → 정보마당 → 사업및제도안내 → 인재정책실 → 전문연구요원제도)

f) 본 통보서를 제출한 업체는 접수마감(2009.6.30) 이후 10일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인력지원 內 전문연구요원제도-처리현황)에서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할 것

[붙임 4]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

연 구 기관명		소재지 (주 소)		전 화 번 호		
연 구 시 설	㎡ 독립시설여부 ()	연 구 기자재	외 점	연구 전담요원	석사이상 명 기타 명	
선정취소 5년 경과 여부(2004. 5. 31이후)			정보처리분야 산업체 선정여부		산업체명 ()	
대학교를 주소로 한 연구소		독립연구소 운영여부 () 대학실험실 사용 및 배타적 사용 계약여부 ()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신 청 당 시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연구 부서	최종학교 (전공)	확인 결과	비 고
신청후 추 가						
위확인자		인사담당 (인)				
2009. . . 위와같이 조사 보고합니다.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병 무 청 장 귀 하						

- ※ 실태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주시되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만 기재하여 주시고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신청당시: 음영부분)이 많아 여백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실태조사는 책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임하여 주시고 조사에 대한 이의 제기는 조사 후 3일 이내에 조사자에게 제기하여야 합니다.
- ※ 실태조사시 연구소 위치확인이 용이하도록 약도(전화, 담당자 성명 등)를 작성 첨부하여 주시고, 신청 후 주소지 이동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구분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배 점																		
I. 연구 인력	가. ‘연구인력 규모(연구전담요원) ○ 학위별 수치화(박사 3, 석사 2, 학사이하 1)에 의한 배점 <table border="1"> <tr> <th>배점</th> <th>10점</th> <th>15점</th> <th>20점</th> <th>25점</th> <th>30점</th> </tr> <tr> <td>대기업 (수치화합계)</td> <td>30미만</td> <td>30이상 - 50미만</td> <td>50이상 -75미만</td> <td>75이상 -100미만</td> <td>100이상</td> </tr> <tr> <td>중소·벤처 (수치화합계)</td> <td>15미만</td> <td>15이상 - 20미만</td> <td>20이상 -25미만</td> <td>25이상 -30미만</td> <td>30이상</td> </tr> </table> * 작성기준 : 당해 연도 신청접수시작일 현재 산기협에 등록된 인원만 해당 * 산기협에 미등록된 인원은 실제로 근무하고 있어도 연구인력으로 불인정 *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은 박사급으로 인정	배점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대기업 (수치화합계)	30미만	30이상 - 50미만	50이상 -75미만	75이상 -100미만	100이상	중소·벤처 (수치화합계)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0점
배점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대기업 (수치화합계)	30미만	30이상 - 50미만	50이상 -75미만	75이상 -100미만	100이상															
중소·벤처 (수치화합계)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II. 연구 개발 투자	가. 기업의 연구개발(R&D) 참여·투자 실적[재무재표 기준] ○ 신규 신청업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조에 의거 세무사·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연구및인력개발비지출명세서’의 지출액을 상대평가하여 점수 부여 ·지출액 상위 50% 이상 : 15점, ·지출액 상위 50% 미만 : 10점 ·미지출 : 5점 ○ 기존 지정업체 –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인원수 비율을 상대평가하여 점수 부여 ·상위 50% 이상 : 15점 ·상위 51% ~ 75% : 10점 ·그 외 : 8점	15점																		
III. 연구 기반· 인프라 확충	가.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병역법시행령 제72조상) ○ 신규 신청업체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점 – 만 1년 이상 : 10점 ○ 기존 지정업체 : 2점(기본점수) 나. IPO(기업공개)연구기관 또는 INNO-BIZ기업 또는 벤처기업인증 또는 고도기술도입 기업 : 5점 * ‘가~나’항 모두 당해년도 신청접수시작일 현재 기준	15점																		

구분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배 점
IV. 연구 성과	가. 연구소의 신기술인증(NET, NEP)등 취득 [1건당 5점이며, '가'항의 최대배점은 15점] ○ 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2조 및 제4조와 신기술(NET)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26조에 의한 NET인증서(최대 3건 인정) ○ 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NEP인증서(최대 3건 인정) ○ IR52장영실상, 테크노CEO상, 유망선진기술기업지정서 등 청장이상의 인증서 및 상(최대 1건 인정, 대표이사만 인정) 나. 기업(연구소)명의 특허나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보유(출원 제외) -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 1건당 5점(최대 2건 인정) ○ 교과부(특정연구개발사업 등) 또는 타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기술 개발사업 참여과제(산·학·연 위탁과제 포함) - 정부사업비(출연금)가 포함된 협약서만 인정 * '가~다'항 작성기준일 : 당해년도 신청접수시작일 현재 기준 * '가~다'항은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 기간동안의 성과만 인정	40점
V. 추천 우대 (가 점 부 여)	가. 다음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외 지방소재 지정업체 : 5점 - '09년 신청접수시작일 현재 연구소 소재지 기준 ○ 기존 지정업체 - 편입우수업체(당해연도 전문요원 편입률 100%인 경우) : 7점 ○ 신규 신청업체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8천만원 ~ 1억5천만원 미만 : 5점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1억5천만원 이상 : 7점 나. 연구분야가 특정연구개발사업 DB분류에 기반한 10대 핵심기술 해당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3점 * '가~나'항 작성기준일 : 당해년도 신청접수시작일 현재 기준	15점
	계	100점

[비 고]

- 상기 추천기준은 기존 및 신규 병역지정업체의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추천시 모두 적용
 - 대기업, 중소벤처기업별로 연구분야(업종)등을 반영하여 상대비교로 평가
 - 후순위등급 추천 기업(연)은 병무청의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장기 지정업체중 연구개발 실적등이 우수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우수기관으로 추천
- 연구기관별 실적기준이며, 추천기준상의 I.~V. 및 각 항목별 배점은 최대 부여가능 점수임

점수 산정 예시

I. 연구인력 (배점30점)

□ 연구인력 부분의 배점은 총 30점으로 학위별 가중치 점수배점은 아래를 참조

ex)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구성의 박사 2명, 석사 4명, 학사이하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 학위별가중치(박사 3, 석사 2, 학사이하 1)에 의한 점수

$$3 \times 2(\text{박사인원수}) + 2 \times 4(\text{석사인원수}) + 1 \times 3(\text{학사인원수}) = 6+8+3 = 17$$

이 경우 위의 기준으로 볼 때 중소(벤처)기업이므로 수치화 합계가 '15이상 ~ 20미만'에 해당되어 15점을 부여받음

II. 연구개발투자 (배점15점)

□ 신규신청업체 해당내용

○ “2008년도 연구및인력개발지출명세서”란? : (신규신청업체만 해당)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설비투자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여 기술개발비용발생액에 대한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취지의 조세혜택을 받기위한 서류의 하나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하여 신고한 ”연구및인력개발지출명세서“가 있을 경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의 확인절차가 어려울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연구및인력개발지출명세서“ 사본을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기업 중 기업유형(대기업/중소벤처)별로 나누어 지출액을 상대평가하여 점수부여

- 지출액 상위 50%이상 : 15점
- 지출액 상위 50% 미만 : 10점
- 미제출 : 5점

□ 기존지정업체 해당내용

- 연구소의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인원수에 따른 업체별 상대비율을 평가하여 점수부여
 - 인원수 상위 50% 이상 : 15점
 - 51%~75%미만 : 10점
 - 그 외 : 8점

III. 연구기반·인프라확충 (배점15점)

가.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병역법 시행령 제 72조상)

○ 신규지정업체 신청기관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고용 : 5점

– 만 1년 이상 고용 : 10점

○ 기존 지정업체 : 기본점수 2점

* 신청기준인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중소·벤처 2인이상)의 고용기간에 한함

* 신규신청업체의 서류제출 시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납세증명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기존지정업체(기 선정업체)의 경우 자동부여 됨

– “병역법시행령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란?

신청일 현재 대기업의 경우 5인(중소(벤처)의 경우 2인)이상의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의 고용기간에 따라 점수 배점

나. IPO(기업공개)연구기관 또는 INNO-BIZ기업 또는 벤처기업인증 또는 고도기술도입 기업 : 5점

IV. 연구성과 (배점40점)

가. 연구소의 신기술인증 (NET, NEP)등 취득기업

[1건당 5점이며, ‘가’항의 최대배점은 15점]

○ 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2조 및 제4조와 신기술(NET)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26조에 의한 NET인증서(최대 3건 인정)

○ 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NEP인증서(최대 3건 인정)

○ IR52장영실상, 유망선진기술기업지정서 등 청장이상의 인증서 및 상(최대 1건, 기업명 또는 대표이사이름으로 수여받은것만 인정)

나. 기업명의 특허 또는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외) :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

[‘나’항의 최대배점은 15점]

다.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위탁과제 포함]등 : 1건당 5점(최대 2건만 인정)

[‘다’항의 최대배점은 10점]

○ 교과부(특정연구개발사업 등) 또는 타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기술개발사업 참여과제(산·학·연 위탁과제 포함)

– 협약서상 협약시작일 또는 협약개시일이 ‘실적 인정기간’인 최근 2년(2007년 6월1일 ~ 2009년 6월 19일) 사이에 들어있는 사업만 인정함

* ‘가~다’항 모두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동안의 성과만 인정

[(2007년 6월 1일~2009년 6월 19일) 기간동안 취득한 기준]

ex)

1. A연구소 실적으로 NET인증서 2건, NEP인증서 1건, 유망선진기술기업지정서 1건이 있는 경우
: NET인증서의 경우 최대 3건 인정되므로 NET 관련 점수는 10점, NEP 관련 점수는 1건이므로 5점, 유망선진기술기업지정서는 1건이므로 5점. **상기의 점수를 더하면 20점이나 ‘가’항의 최대 배점은 15점으로 제한 되어 있으므로 실제 취득점수는 15점임**
2. B연구소의 실적으로 국내특허가 2건이 있으며 실용신안이 2건이 있는 경우
: 국내특허점수 2건 인정으로 10점, 실용신안 2건 인정으로 10점, 점수를 더하면 10점이나 **‘나’항의 최대 배점은 15점으로 제한 되어 있으므로 실제 취득점수는 15점임**
3. C연구소의 실적으로 교과부사업참여과제가 2건, 산자부사업참여과제가 1건 있는 경우
: 정부사업참여과제는 최대 2건만 인정하므로 **실적은 3건이라도 취득점수는 10점**

V. 추천우대 (배점15점)

가. 다음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외 지방소재 지정업체 : 5점

* 지방소재 가점은 연구소 소재지 기준

○ 기존업체 : 편입우수 업체(당해년도 전문연구요원 편입률100%인 경우) : 7점

* 당해 배정받은 소요인원을 당해연도 접수시작일 기준 모두 편입시킨 업체

○ 신규업체 : 연구인력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 8천만원~1억 5천만원 미만 : 5점

- 1억 5천만원 이상 : 7점

* 연구인력: 접수년 접수시작일 현재 산기협 연구소지원팀 등록 기준

나. 특정연구개발사업 DB분류에 기반한 10대 핵심기술(core technology) 분야 연구소란? 배점 3점

-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분야가 아래 <별첨부속표> 분류표상의 분야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코드를 기재함

[붙임 7]

[별첨 부속표] 10대 핵심기술(Core Technology) 분류표

100 정보산업분야			
110	컴퓨터기술	120	통신기술
111	컴퓨터 본체기술	121	전송기술
112	주변기기 기술	122	교환기술
113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123	통신망기술
114	소프트웨어 생산기술	124	이동/위성통신 기술
115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	125	초고주파/레이다 기술
119	기타	126	단말/통신부품 기술
		129	기타
130	반도체기술	140	산업전자기술
131	집적회로 기술	141	전자제품 기술
132	개별소자/신소자 기술	142	계측제어/자동화 기술
133	반도체 공정/장비/재료 기술	143	전력 계통/기기/전자 기술
134	화합물반도체 기술	144	전기전자 응용기술
135	주문형 반도체 기술	149	기타
139	기타		
150	요소기술		
151	표시장치 기술		
152	광기술		
153	센서기술		
154	신호처리 기술		
159	기타		
200 기계설비분야			
210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220	단위기계 핵심부품 기술
211	전산이용 최적설계 기술	221	열 유체기기 기술
212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222	내연기관 기술
213	강도설계/피로파괴 기술	223	산업기계 기술
214	유체 해석 기술	224	환경보전 설비 기술
215	열전달 해석 기술	225	수송기계 기술
216	동역학 해석 기술	226	정밀기계 기술
217	소음/진동 해석 기술	227	전기기계 기술
219	기타	229	기타

☞ 뒷장에 계속

230	기계자동화 기술	240	생산기반 기술
231	CAD/CAM 기술	241	금형 기술
232	감시/진단/제어 기술	242	가공 기술
233	FA Network 기술	243	주물 기술
234	생산제어소프트웨어 기술	244	용접 기술
235	생산공정자동화시스템 기술	245	열처리 기술
239	기타	246	표면처리 기술
		249	기타
250	표준 측정 시험평가 기술		
251	측정표준 기술		
252	분석 및 시험평가 기술		
253	산업안전 기술		
259	기타		
300 소재·물질·공정분야			
310	금속소재 기술	320	세라믹소재 기술
311	기계 기능재료 기술	321	기계 및 열 기능재료 기술
312	열 기능재료 기술	322	광기능재료 기술
313	화학 기능재료 기술	323	생화학 기능재료 기술
314	전자기 기능재료 기술	324	전자기 기능재료 기술
319	기타	325	복합 기능재료 기술
		329	기타
330	고분자소재 기술	340	정보전자소재 기술
331	기계 기능재료 기술	341	정보처리 기능재료 기술
332	광 전자 기능재료 기술	342	정보저장 기능재료 기술
333	복합 기능재료 기술	343	정보표시 기능재료 기술
334	분리 기능재료 기술	344	정보통신 기능재료 기술
339	기타	349	기타
350	정밀화학 기술	360	공업화공정 기술
351	생리활성 의약소재 기술	361	석유 석탄산업 공정 기술
352	생리활성 농약소재 기술	362	기초산업공정 기술
353	생리활성 향장소재 기술	363	소비산업공정 기술
354	기능성 무기재료 기술	364	산업화공정 기술
355	특수 기능소재 기술	369	기타
359	기타		
370	특성평가분석기술		
371	소재특성평가분석 기술		
372	정밀화학 특성평가 분석 기술		
379	기타		

☞ 뒷장에 계속

400 생명과학분야	
410 생명공학기술	420 생물자원 생산이용 기술
411 분자 세포공학 기술	421 식물자원 생산 이용 기술
412 단백질 및 탄수화물 공학 기술	422 동물자원 생산 이용 기술
413 미생물 이용 기술	423 식품 생명공학 기술
414 생물공정 기술	429 기타
419 기타	
430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	
431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	
439 기타	
500 원자력·자원·에너지분야	
510 원자력기술	520 자원기술
511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521 지질조사 기술
512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술	522 자원탐사 기술
513 방사선 이용 기술	523 자원개발 기술
514 원자력 안전관리기술	524 자원이용 기술
519 기타	525 환경/방재 기술
	529 기타
530 에너지 기술	
531 에너지 수송 절약 저장 공정기술	
532 신재생 에너지 이용 기술	
533 화석에너지 이용기술	
534 폐자원 활용기술	
539 기타	
600 대형·복합기술분야	
610 항공기술	620 우주·천문기술
611 시스템기술	621 시스템 엔지니어링
612 구조 및 재료기술	622 위성체 기술
613 공력 설계기술	623 발사체 기술
614 비행제어 기술	624 위성탑재체 기술
615 항공전자 기술	625 지상관제 기술
616 엔진기술	626 지상설비 기술
619 기타	627 천문
	629 기타
630 해양 기술	640 선박·해양장비 기술
631 해양 기초기반 기술	641 시스템 통합 설계 기술
632 해양 환경보전 기술	642 유체성능 해석 기술
633 해양자원 이용 기술	643 설계 및 생산자동화 기술
634 해양공간 활용 기술	644 운항 안전 및 자동화 기술
639 기타	645 해양장비 기술
	649 기타

☞ 뒷장에 계속

650	로봇 및 메카트로닉스 기술	
651	시스템 기술	
652	구조설계 기술	
653	인식 기술	
654	인터페이스 기술	
655	인공지능 기술	
656	MEMS 및 재료 기술	
659	기타	
700 공공복지분야		
710	환경기술	720 보건의료기술
711	환경보전관리기술	721 의과학 기술
712	환경오염방지기술	722 의료용 생체공학 기술
713	폐기물 처리기술	723 의료정보시스템 기술
714	환경보건 생태 관리기술	724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
719	기타	729 기타
730	교통기술	740 건설(주택)기술
731	교통설계시스템 기술	741 건설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
732	교통계획 기술	742 건설시공 기술
733	교통운영 기술	743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734	물류 기술	744 건설관리 기술
739	기타	749 기타
750	기상기술	
751	기상관측예보기술	
752	기후역학 기술	
753	기상정보이용기술	
759	기타	
800 원천요소기술분야		
810	기반기술	820 미래원천기술
811	극한기술	821 핵융합기술
812	측정 및 계측기술	822 초전도기술
813	파동 및 입자빔기술	829 기타
819	기타	
899	기타	
900 연구개발생산성분야		

발급번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또는 거소															
징수원 장	④상호 또는 명칭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장 소재지	☎														
	⑦대표자											⑧주인(법인)등록번호				
⑨확인서의 사용목적												⑩제출처		⑪소요수량		통
연월	⑫급여액	⑬세액	⑭납부연월일	연월	급여액	세액	납부연월일									
발급일 현재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같이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사업장소재지															
	세무사등록번호					전화번호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세무사 (인)																

<별첨3>

* [추천기준 II항관련 참조양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별지 제3호서식)

과세연도	.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제출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 등록 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당해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명세							
계정과목	구분 및 비목	⑥	⑦	⑧	⑨	⑩	⑪계
	⑫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⑬ 직 전 4 년 간 발생합계액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금액						
⑭ 직 전 4 년 간 연평균지출액	$\frac{48}{12} \times \frac{1}{4} \times \text{당해연도 월수}$						
	원	$\text{⑬} \times \frac{\text{직전 4년간의 사업연도 월수}}{4} \times \frac{1}{12}$					
⑮증 가 발 생 금 액(⑫ - ⑭)							
공 제 세 액							
구 분	<16>대 상 금 액 (⑫, ⑮)	<17>공제율	<18>공제세액 (<16>×<17>)	<19>비 고			
<20>당해연도총발생 금액공제		15/100					
<21>증가발생금액 공 제		40/100 (중소기업의경우 50/100)					
<22>당해연도에 공제받을세액	중소 기업(<20>과 <21>중 선택						
	중 소 기 업 외 의 기 업(<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2>당해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란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정부출연 국가연구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벤처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다. 다음 각각의 권리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에 관한 과제를 특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연구개발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 동법 시행령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④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을 말한다.

1. 원자력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산업관련 기술개발사업
4.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개발사업
5.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6.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
7.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연구·개발사업

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9.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10.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11.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1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
13.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14.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신기술의 개발·사업화 사업
1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출연한 기술혁신사업
16.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성과지원사업, 지식경제부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지식경제부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국토해양수산부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청의 국내조달시장연계신제품개발사업)

III.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시행

■ 추진배경

- 최근 연간 1,000여개의 기업부설 연구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700~800여개의 신규 병역 지정업체(연구기관)로의 지정을 신청해 오고 있으며, 이중 300여개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는 등 병역지정업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2004년의 경우를 보면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중 기업(연)은 2,934개 기관에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은 1,820명으로 기업당 1명씩의 배정도 안되는 등 자원인력의 수적 한계 봉착
-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부족에 따라 장기 지정업체 인원배정 제한
 - 장기 연구프로젝트 수행 위축(생명과학, 원자력, 광통신 분야 등)
- 우수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중심으로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지정업체 선정 및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시기의 조기 결정
 - 예년 : 12월 확정 → 현행 : 11월경 확정

■ 추진경위

- 전문연구요원제도 업무추진 방식 개선방안 확정(1999.12)
- 추천기준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간 간담회 개최 등(2001.4)
 - 과기부, 병무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대·중소·벤처기업등 관계자 참석
- 과기부 및 산기협 인터넷에 추천기준(안) 공지(2001.4)
-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시행(2001.6)
-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개정 확정·공지(2004.6)
-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개정 확정 공지(2009.1)